

법령 개정에 따른 소화기 충약관련 안내

❖ 『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』 개정(2012.2.5.)에 따라 소화기용 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폐지 등 제도 개선에 따른 소화약제 충약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자 함

근거

-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6조(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)
- 「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37조(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)
- 「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(소방방재청고시 제 2012-56호)
- 「소화약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(소방방재청고시 제 2012-57호)

기존 소화기의 소화약제 충약시 문제점

기존 소화기의 소화약제 충약과정

○ 판매처에서 정비 후 유통(허가 및 자격조건 없음)

- 축압식소화기 : 사용한소화기 + 검사받은 소화약제 충약(충전자인 적사항 용기에 부착(합격표시)) + 질소충전 ⇒ 유통

- 가압식소화기 : 사용한소화기 + 검사받은 소화약제 충약(충전자인 적사항 용기에 부착(합격표시)) + 가압용가스용기교체 ⇒ 유통

□ 일반충약 등에 따른 문제점

○ 정비의 법적 자격조건 없어 불량소화기의 처벌대상 모호

- 정비에 대한 책임소재 불분명

⇒ 낡은 소화기를 재충전시 폭발사고발생, 해당 업체를 처벌할 수 없음, 소화기 재충전 판매에 대해 규정 없음

(CBS '09.07.15) “소화기 폭발해도 처벌불가, 불량소화기 판친다”)

○ 확인처리가 없음에 따른 기준 미달소화기의 유통

- 재충약 소화기 거의 불량

⇒ 재충전약 소화기의 불량률이 평균 24%(기능부분 43%, 소화약제량 기준미달 등 58%, 소방방재청 시험결과)

(소방방재신문('09.11.10) “재충전 소화기 절반이상 불량”)

○ 소비자의 정보부족에 따른 눈속임

- 소화기 정비를 빙자한 재충전 사기

⇒ 소방서 점검을 사칭하여 소화약제를 충전구매 강요 후 비용 청구 (불량소화기로 납품, 외관만 청소후 납품 등)

(MBC 뉴스투데이('11.03.28) “소화약제 충전 사기 빈번 발생”)

법령개정사항

○ 현행 소화기 검사방법 개선

- 소화기 및 소화약제의 통합검사에 따라 소화기용소화약제의 유통 폐지(2012.2.5시행)

▶ 『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별표3에 따라 형식 대상 소방용품을 소화약제(소화설비용에 한한다)로 규정

○ 설비용소화약제에 한하여 유통

- 설비용소화약제는 유통되며, 설비용에만 사용

○ 재활용소화기 제조업체에서 제품검사 후 유통

- 재활용의 소화기 정비시 제품검사후 유통(법36조제2항에 따라 생산 제조업체에서만 제품검사 실시)

기대효과

○ 재충약소화기의 품질확보 및 안전사고 방지

- 재충약소화기의 불량문제 해결 및 소화기성능확보
- 충약후 가스충전시 폭발 등 안전사고 문제 해결

○ 소화약제 재충약 사기 방지

- 정비업의 법적규제로 정비소화기의 제조업체에서 재충약 완료 후 제품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규정 보완

위 사실 내용과 같이 2012.02.05.소방법 개정으로 그 유효기간을 2013.02.08까지 만료됩니다.